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72
------	------

2021. 4. 26.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4월 1일, 박순규 의원

나.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1. 4. 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박순규 의원)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지원시설(DMC산학협력연구센터)의 규모는 연면적 29,760m<sup>2</sup> 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음.

- 「시설물안전법」 1~3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법령에 의해 안전하지 않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은 사용중지 등의 관련 근거가 부족하므로,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 시 시민과 사용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제4항).

###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한 위험 발생 시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 취소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나. DMC산학협력연구센터 현황

- DMC산학협력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는 기업과 대학연구소가 디지털콘텐츠와 IT기반 융합기술을 공동연구하고 산학연계를 구축하는 산학협력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2006년에 상암동 DMC단지에 조성한 시설임.
-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는 연구센터(지하4층~지상 15층)는 방송, 영화, 디지털미디어, 게임, 디지털콘텐츠, IT, 소프트웨어 업종 등에서 현재 23개 기업과 8개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고, 상주 인력이 2,500여명에 달함.
- 입주대상은 서울소재 대학 부설연구소와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으로, 입주기간은 2년이며 고용창출, 기술성 등 경영실적과 DMC활성화 기여도 등에 대한 연장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까지 입주 가능함.

##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현황 >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 시설규모 : 지하4층/지상15층, 대지면적(3,367㎡), 연면적(29,760㎡)
- 시설용도 : R&D 기반조성 및 대학·기업 연구소 유치
- 개 관 : 2006. 8월
- 소요예산 : 463억 3천만원(건물매입비)
- 면적 및 입주현황(입주율 85%), (상주인력 2,500명)



구분	입주자	면적(㎡)	개사	소계
입주기업	기업/지원시설	11,546	23	33(61실)
	대학연구소	5,572	8	
	유관기관	5,493	서울기술연구원 등 2개	
운영시설	복리시설	1,847	어린이집, 구내식당 등 3개	3(3실)
	공용시설	852	세미나실, 회의실 등	
계		25,311	-	36(64실)
공실현황		4,448	기업 5개, 연구소 8개	13
총계		29,760	입주율 85%(면적기준)	49(77실)

- 「건축법 시행령」상 ‘준다중이용 건축물(노유자 시설)<sup>1)</sup>’에 속하는 연구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등)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sup>2)</sup>.
- 지난해 서울산업진흥원이 실시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에 따르면,

---

1) 제2조(정의) 제17호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타. (생략)

2)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외부형태와 구조안전, 화재·피난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sup>3)</sup>

#### 다. 연구센터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안 제20조의4 제4항 신설)

- 개정안은 연구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연구센터는 현재 대학연구소와 기업 지원시설 이외에도 은행, 어린이집, 구내식당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어 시설물의 안전성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대형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될 우려가 있음<sup>4)</sup>.
  -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 연면적, 경과연수

3) 서울산업진흥원이 유지관리 점검자(건축사사무소온도)에 의뢰에 실시(2020.4.1.~2020.4.7.)한 정기점검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보고서.

4)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고속철도, 다목적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
2.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교량,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
3. 제3종시설물 : 제1종·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정하는 시설물(토목분야(준공 후 10년 경과), 건축분야(준공 후 15년 경과))

등을 고려해서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을 정하고 있으나, 연구센터는 시설물의 지정요건인 준공(2006. 8월) 후 15년(제3종)과 3만㎡ 면적(제2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다만,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15년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강화되고 정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서울산업진흥원은 연구센터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고,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시에 제3종 시설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
-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맞춰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시설물안전법의 안전점검 실시시기 >

안전등급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따라서 시민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 시설물의 사용 중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사용중지’ 나 ‘사용허가 취소’ 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른 용어로, 이 법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sup>5)</sup>.
-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sup>6)</sup>.
- 따라서 「시설물안전법」 제23조와 「건축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로 수정하여 법령의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0조의4(사용허가 등) ① ~ ③	제20조의4(사용허가 등) ① ~ ③

- 5)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6)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p>(생략)</p> <p>④ 시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u>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개정안과 같음)</p> <p>④ 시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사용제한·사용금지 등</u>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	---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수정안 요지

##### 1. 수정이유

- 법령의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사용중지’ 나 ‘사용허가 취소’ 를 「시설물안전법」 과 「건축물관리법」 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로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법령의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사용제한·사용금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로 수정함(안 제20조의4 제4항).



Ⅵ.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272
----------	---------

제안년월일 : 2021년 4월 26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법령의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사용중지’ 나 ‘사용허가 취소’ 를 「시설물안전법」 과 「건축물관리법」 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로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법령의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사용제한·사용금지,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 로 수정함(안 제20조의4 제4항).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의4 제4항 중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경우에는 사용제한·사용금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0조의4(사용허가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20조의4(사용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u>경우 사용</u> <u>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u> <u>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u> <u>조치</u> 를 할 수 있다.	제20조의4(사용허가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시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u>경우에는</u> <u>사용제한·사용금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u> <u>를</u>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제한·사용금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4(사용허가 등) ① ~ ③ (생 략)  <div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div>	제20조의4(사용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제한 · 사용금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u>